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1. 17.

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1. 17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군수 읍·면소통간담회('23년 2월) 시 하일면 주민의 분반 신청사항 반영 및 행정구역(반)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 아울러, 행정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고성군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(별표) 신설

- 622개 반(기존)→ 630개 반(개정)

구분			조정전		증감		조정후	
읍면	행정리	사유	마을	반	마을	반	마을	반
고성군				622		+8		630
고성읍	외우산	분반	1	3	-	+1	1	4
삼산면	용호	분반	1	3	-	+2	1	5
하일면	동화	분반	1	4	-	+1	1	5
개천면	차치	신설	1	0	-	+1	1	1
개천면	월곡	신설	1	0	-	+1	1	1
구만면	신계	신설	1	0	-	+1	1	1
구만면	선동	행정누락분	1	0	-	+1	1	1

나. 상위법 준용 법률 조항 수정

-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→ 제7조제6항

다. 현실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제 미운영 위원회 부분 삭제

- “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” 삭제

라. 행정제도 개편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: 제3조, 제7조

1) 가구 → 세대

2) 공지사항의 주지 → 공지사항 전달

3) 대행정 여망사항 →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

4) 주민자치회 → 반사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2)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(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의 마련)

나. 예산조치: 반장 정수 증가에 따른 연 400천원 소요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해당사항 없음: 복지지원과-37567(2023. 9. 26.)호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496호

가) 예고기간: 2023. 9. 27. ~ 2023. 10. 17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(반설치)”를 “(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하부조직으로“반””을 “하부조직으로 반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반의 설치기준)”을 “(반 설치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 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의 제목 “(반명칭 및 관할구역)”을 “(반 명칭 및 관할구역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반의”를 “반”으로, “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”을 “읍·면장”으로, “군수가 확정 공고한다”를 “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확정 공고하며, 별표와 같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, “5일이내 도지사”를 “5일 이내 경상남도지사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명예반장”을 “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”으로, “및 보수등에”를 “등에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반상회)”를“(반상회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,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반 명칭 및 관할구역(제4조 관련)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총계			630			
고성읍			156			
고성읍	성내리	서내	7	1반~7반	일원	
		남내	6	1반~6반	◇	
		동내	5	1반~5반	◇	
	서외리	서외1	10	1반~10반	◇	
		서외2	5	1반~5반	◇	
	수남리	수외	6	1반~6반	◇	
		남외	6	1반~6반	◇	
		구암	2	1반~2반	◇	
		남포	4	1반~4반	◇	
		코아루	0	-	◇	
	동외리	동외	8	1반~8반	◇	
		남산1	5	1반~5반	◇	
		남산2	6	1반~6반	◇	
		정동1	6	1반~6반	◇	
		정동2	2	1반~2반	◇	
	송학리	송학	8	1반~8반	◇	
		무학	8	1반~8반	◇	
	기월리	기월	4	1반~4반	◇	
		신기	2	1반~2반	◇	
	교사리	교동	4	1반~4반	◇	
		사동	2	1반~2반	◇	
	무량리	무량	2	1반~2반	◇	
	덕선리	양덕	1	1반	◇	
		선동	2	1반~2반	◇	
	대평리	대평	2	1반~2반	◇	
		울촌	1	1반	◇	
	우산리	내우산	2	1반~2반	◇	
		외우산	4	1반~4반	◇	
		상촌	2	1반~2반	◇	
	죽계리	죽동	4	1반~4반	◇	
		장계	4	1반~4반	◇	
		평계	1	1반	◇	
	울대리	울대	4	1반~4반	◇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고성읍	월평리	매수	3	1반~3반	일원	
		홍류	3	1반~3반	〃	
		거운	1	1반	〃	
	신월리	신부	4	1반~4반	〃	
		곡용	2	1반~2반	〃	
	이당리	면전	3	1반~3반	〃	
		이곡	2	1반~2반	〃	
	대독리	대안	1	1반	〃	
독실		2	1반~2반	〃		
삼산면			35			
삼산면	병산리	병산	3	1반~3반	일원	
	두포리	장지	3	1반~3반	〃	
		두모	2	1반~2반	〃	
		포교	2	1반~2반	〃	
		와도	0	-	〃	
		덕산	2	1반~2반	〃	
	미룡리	대포	2	1반~2반	〃	
		용호	5	1반~5반	〃	
		미동	2	1반~2반	〃	
	삼봉리	상촌	3	1반~3반	〃	
		해명	2	1반~2반	〃	
	장치리	중촌	2	1반~2반	〃	
		장백	2	1반~2반	〃	
	판곡리	판곡	5	1반~5반	〃	
	하일면			37		
하일면	학림리	임포	3	1반~3반	일원	
		도동	1	1반	〃	
		학동	2	1반~2반	〃	
		금단	3	1반~3반	〃	
	수양리	수양	4	1반~4반	〃	
	용태리	용태	3	1반~3반	〃	
		가룡	1	1반	〃	
	송천리	송천1	2	1반~2반	〃	
		자란	1	1반	〃	
		송천2	2	1반~2반	〃	
	오방리	오방	4	1반~4반	〃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하일면	춘암리	춘암	3	1반~3반	일원	
		용암포	2	1반~2반	〃	
		맥전포	1	1반	〃	
	동화리	동화	5	1반~5반	〃	
하이면			35			
하이면	덕호리	두수	2	1반~2반	일원	
		부평	1	1반	〃	
		신덕	4	1반~4반	〃	
		군호	3	1반~3반	〃	
	덕명리	공룡	1	1반	〃	
		덕명	4	1반~4반	〃	
	월흥리	월흥	4	1반~4반	〃	
		입암	1	1반	〃	
		신흥	1	1반	〃	
		정곡	1	1반	〃	
	사곡리	사곡	2	1반~2반	〃	
	석지리	남산	1	1반	〃	
		음촌	1	1반	〃	
		양촌	2	1반~2반	〃	
		신촌	1	1반	〃	
	와룡리	와룡	2	1반~2반	〃	
	봉현리	봉현	3	1반~3반	〃	
	봉원리	외원	1	1반	〃	
		내원	0	-	〃	
	상리면			28		
상리면	척번정리	척정	3	1반~3반	일원	
		조동	1	1반	〃	
		평촌	1	1반	〃	
	고봉리	고봉	2	1반~2반	〃	
		비곡	1	1반	〃	
	신촌리	신촌	3	1반~3반	〃	
	오산리	오산	2	1반~2반	〃	
		중촌	1	1반	〃	
		가동	1	1반	〃	
	동산리	동산	2	1반~2반	〃	
	망림리	망림	1	1반	〃	
		구미	2	1반~2반	〃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상리면	무선리	무선	1	1반	일원	
		선동	2	1반~2반	〃	
	자은리	자은	1	1반	〃	
	부포리	부포	2	1반~2반	〃	
		내부포	2	1반~2반	〃	
대가면			40			
대가면	척정리	화암	2	1반~2반	일원	
		척곡	2	1반~2반	〃	
		관동	3	1반~3반	〃	
	금산리	월촌	1	1반	〃	
		세동	2	1반~2반	〃	
		신화	1	1반	〃	
		가동	1	1반	〃	
	암전리	암전	4	1반~4반	〃	
	유흥리	유흥	2	1반~2반	〃	
		삼계	2	1반~2반	〃	
	양화리	양화	2	1반~2반	〃	
	연지리	지동	3	1반~3반	〃	
		평동	2	1반~2반	〃	
	송계리	송계	3	1반~3반	〃	
		장전	2	1반~2반	〃	
	갈천리	외갈	1	1반	〃	
		내갈	2	1반~2반	〃	
		종생	2	1반~2반	〃	
	신전리	신전	3	1반~3반	〃	
	영현면			22		
	영현면	침점리	침점1	2	1반~2반	일원
침점2			1	1반	〃	
추계리		추계	1	1반	〃	
봉발리		봉발1	1	1반	〃	
		봉발2	1	1반	〃	
		금능	1	1반	〃	
대법리		대촌	2	1반~2반	〃	
		법촌	2	1반~2반	〃	
영부리		영부	2	1반~2반	〃	
		영동	1	1반	〃	
봉림리		봉림	2	1반~2반	〃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영현면	신분리	평촌	1	1반	일원	
		매촌	1	1반	〃	
		신촌	1	1반	〃	
	연화리	연화1	2	1반~2반	〃	
		연화2	1	1반	〃	
영오면			28			
영오면	영대리	옥동	1	1반	일원	
		영대	4	1반~4반	〃	
	오서리	오서	4	1반~4반	〃	
	오동리	오동	3	1반~3반	〃	
	영산리	신흥	1	1반	〃	
		성산	2	1반~2반	〃	
		낙안	1	1반	〃	
	성곡리	생곡	1	1반	〃	
		금산	1	1반	〃	
	연당리	범계	1	1반	〃	
		연촌	1	1반	〃	
		본양	1	1반	〃	
		악양	1	1반	〃	
	양산리	양기	3	1반~3반	〃	
		양월	3	1반~3반	〃	
	개천면			20		
	개천리	청광리	청동	1	1반	일원
청남			1	1반	〃	
나선리		나동	1	1반	〃	
가천리		가천	2	1반~2반	〃	
		차치	1	1반	〃	
봉치리		봉치	2	1반~2반	〃	
용안리		용안	2	1반~2반	〃	
		용궁	0	-	〃	
북평리		북평	1	1반	〃	
		원동	0	-	〃	
명성리		상명	1	1반	〃	
		하명	2	1반~2반	〃	
예성리		덕성	1	1반	〃	
		구례	1	1반	〃	
좌연리		좌연	2	1반~2반	〃	
		좌이	1	1반	〃	
		월곡	1	1반	〃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구만면			21			
구만면	효락리	낙동	3	1반~3반	일원	
		효대	1	1반	〃	
	주평리	주평	2	1반~2반	〃	
	화림리	신계	1	1반	〃	
		화촌	1	1반	〃	
		당산	2	1반~2반	〃	
	선동	선동	1	1반	〃	
		연동	2	1반~2반	〃	
	저연리	저동	1	1반	〃	
		와룡	2	1반~2반	〃	
	용와리	용당	1	1반	〃	
		광암	2	1반~2반	〃	
	광덕리	중암	1	1반	〃	
덕암		1	1반	〃		
회화면			52			
회화면	배둔리	관인	6	1반~6반	일원	
		가례	5	1반~5반	〃	
		양지	5	1반~5반	〃	
		안의	5	1반~5반	〃	
	당항리	당항	4	1반~4반	〃	
	봉동리	자소	5	1반~5반	〃	
		금봉춘	2	1반~2반	〃	
		동촌	3	1반~3반	〃	
	어신리	석전	1	1반	〃	
		산북	3	1반~3반	〃	
		어선	3	1반~3반	〃	
	삼덕리	월계	4	1반~4반	〃	
		남진	1	1반	〃	
		신천	2	1반~2반	〃	
		치명	1	1반	〃	
	녹명리	녹명	2	1반~2반	〃	
	마암면			41		
마암면	두호리	두호	4	1반~4반	일원	
	삼락리	곤기	3	1반~3반	〃	
		평부	4	1반~4반	〃	
	보전리	보대	2	1반~2반	〃	
		전포	2	1반~2반	〃	
		동정	2	1반~2반	〃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마암면	화산리	원진	2	1반~2반	일원	
		법진	2	1반~2반	〃	
		화산	4	1반~4반	〃	
	도전리	명송	1	1반	〃	
		도전	2	1반~2반	〃	
		용전	1	1반	〃	
		초선	2	1반~2반	〃	
	장산리	장산	3	1반~3반	〃	
	성전리	성전	2	1반~2반	〃	
	신리	신리	2	1반~2반	〃	
	석마리	석마	3	1반~3반	〃	
동해면			52			
동해면	장기리	용흥	2	1반~2반	일원	
		장기	3	1반~3반	〃	
	양촌리	검포	3	1반~3반	〃	
		덕곡	2	1반~2반	〃	
		법동	3	1반~3반	〃	
	외산리	대천	2	1반~2반	〃	
		좌부천	2	1반~2반	〃	
	내산리	내신	2	1반~2반	〃	
		전도	2	1반~2반	〃	
	용정리	매정	3	1반~3반	〃	
		가룡	3	1반~3반	〃	
	장좌리	우두포	1	1반	〃	
		상장	3	1반~3반	〃	
		하장	2	1반~2반	〃	
		구학포	2	1반~2반	〃	
	봉암리	장항	2	1반~2반	〃	
		입암	3	1반~3반	〃	
		동림	2	1반~2반	〃	
	외곡리	정남	2	1반~2반	〃	
		정북	2	1반~2반	〃	
	내곡리	남촌	3	1반~3반	〃	
		북촌	3	1반~3반	〃	

읍면별	법정리별	행정리별	반수	반명	구역	비고
거류면			63			
거류면	당동리	당동	4	1반~4반	일원	
		신당	4	1반~4반	〃	
		봉곡	3	1반~3반	〃	
	신용리	용동	3	1반~3반	〃	
		마동	4	1반~4반	〃	
		상원	2	1반~2반	〃	
		하원	3	1반~3반	〃	
	화당리	화당	2	1반~2반	〃	
	거산리	거산	3	1반~3반	〃	
	가려리	덕촌	3	1반~3반	〃	
		가동	3	1반~3반	〃	
	송산리	송정	2	1반~2반	〃	
		구현	2	1반~2반	〃	
		도산촌	2	1반~2반	〃	
	은월리	월치	3	1반~3반	〃	
		정촌	2	1반~2반	〃	
		신은	3	1반~3반	〃	
	용산리	용산	6	1반~6반	〃	
	감서리	봉림	3	1반~3반	〃	
		감동	2	1반~2반	〃	
		용운	2	1반~2반	〃	
		산성	2	1반~2반	〃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반설치) 리의 하부조직으로 “반”을 둔다.</p> <p>제3조(반의 설치기준) 반은 20내지 30가구(도시지역은 15내지 25가구)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,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<신 설></p> <p>제4조(반명칭 및 관할구역) ①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<u>군수가 확정 공고</u>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6항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반 설치) -- 하부조직으로 반-----.</p> <p>제3조(반 설치기준) ①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과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리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반 명칭 및 관할구역) ① 반----- 읍·면장----- ----- ----- <u>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확정 공고하며, 별표와 같다.</u></p>

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 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 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반장) ① (생략)

②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, 임무 및 보수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반상회) ①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중 대 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“반”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“주민자치회”를 운영한다.

<신설>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----- 따라 -----
----- 5
일 이내 경상남도지사-----

제5조(반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 명예반장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-----
----- 등에 -----

제7조(반상회 운영) ①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,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그 밖에 반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제>

고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반장 정수 증가에 따른 반장 수당(연 400천원) 추가 소요
- 25,000원×2회×8명=40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해당 개정 조례안은 반 증설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행정과장 최낙창

□ 지방자치법**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**

-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법제업무 운영규정**제24조의4(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)**

-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·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·예규등이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·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.